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37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(2606)

‘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한국수안		
	주 소	우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륜로30번길 51-5		
	전화번호	031-269-0306	팩스번호	-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(주)홍익기술단		
	주 소	우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		
	전화번호	043-230-7801	팩스번호	-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86호
- 명 칭 :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
- 기술분야 : 토목 > 수자원 >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2016.03.23. ~ 2029.03.22.(13년)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